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의 수를 28명 이내로 변경하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추가함(안 제6조제2항·제3항).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금지 행위에 방위산업기술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된 자가 특수매체기록의 반환 등을 요구받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부·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것을 추가하고, 위반시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호 및 제21조제1항).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내용에 보호구역의 설정 등을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지침을 정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는 등의 목적으로 발생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의 현황 등을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1. 방위산업기술 유출 등에 대한 중과실범 간 형벌의 비례성 문제 및 과실범에 대한 미수범, 예비·음모 처벌 규정 부적절(안 제10조제4호 및 제21조제1항·제2항)

- 개정안 제10조제4호는 방위산업의 유출 및 침해 금지 행위로 현행 법 제19조¹⁾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 등을 요구받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추가하며,

개정안 제21조제1항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게 하고, 제21조제2항은 일반적으로 제10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개정안은 고의로 제10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중과실로

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 및 학생 등 관계자를 포함한다)
2.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제11조에 따라 유출 및 침해행위의 신고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제12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해당 행위를 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형법이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됨을 명시²⁾하고 있고, 형법 및 특별형법상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 정한 법정형은 고의범에 비하면 낮은 편임³⁾.

고의 또는 중과실로 동일한 행위를 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⁴⁾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현행법 제10조제3호⁵⁾는 중대한 과실로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⁶⁾하고 있어, 중대한 과실로 제10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처벌규정에 비하여 법정형이

2)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3) 박상옥 등, 「주석형법, 총칙1」, 박영사, 2020., p. 172.~173.

4)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예시

「선박안전법」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②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15조제2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선박을 해양사고에 이르게 한 선박소유자

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3.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6)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낮은 상황이므로,

유사한 법익침해에 대한 중과실범의 형량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0조제4호의 행위에 대한 고의범과 중과실범의 형량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제10조제4호의 금지행위를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지행위와 함께 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통해서 처벌하고 있고, 현행법 제21조제6항⁷⁾과 제22조⁸⁾는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 및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우리 형법은 과실의 미수범 및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⁹⁾ 제10조제4호 금지행위의 과실범에 대한 미수범과 예비·음모를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경우 현행 형사법 체계와 충돌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 제10조제4호의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10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중과실범을 제10조제5호로 분리하고, 제10조제5호의 중과실범은 현행법 제10조제3호의 중과실범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마련함.

7) 제21조(벌칙) ①~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8) 제22조(예비·음모) ① 제21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1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박상옥 등, 「주석형법, 총칙1」, 박영사, 2020., p. 204.

<안 제10조 및 제21조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u>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신 설>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u>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u>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u>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u> 처한다. <u>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u> ② <u>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u>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u>제10조제3호에</u>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u>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u> 5. <u>중대한 과실로 제4호의 거부, 기피 또는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u> 제21조(벌칙)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u>제10조제3호 및 제5호에</u>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지정취소 사유의 신설 필요(안 제16조의2제3항)

- 개정안 제16조의2제1항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개정안은 ‘지정취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지정취소는 전담기관에 대한 침익적 행정행위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성¹⁰⁾이 있다고 보임.

- 따라서, 개정안 제13조제3항에 지정취소의 사유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개정안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마련함.

<안 제16조의2제3항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①·②(생략) <신설>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①·②(생략)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0) ‘지정제도 도입 시 인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연관성이 큰 제도인 경우에는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위법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위임규정을 두도록 한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 349.

개 정 안	수 정 의 견
③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개정안의 제3항과 같음)

- 그 밖에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성 완)